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 유형

기준일: 2024. 07. 2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작성단위	소관업무	적용근거	비공개 대상 정보
경영기획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직원 제안제도	발명진흥법 제19조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만족도 조사	통계법 제33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기초자료
	인사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장계령 제20조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업무	적용근거	비공개 대상 정보
경영기획부	전산,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통신망 경고(ip대역) 시스템 보안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 계획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사업운영부	시설안전	청사관리(방호)	공단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는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청사 내 보안시설(기계실, 상황실 등) 정보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등 당직명령부
	시설안전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물질 보관시설 위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사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과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업무	적용근거	비공개 대상 정보
경영기획부	법무	재판 (재판과 관련된 문서 일체)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
	법무	수사	해당없음 (다만, 공단에서 협조하고 있는 수사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작성단위	소관업무	적용근거	비공개 대상 정보
경영기획부	감사	감사	불시감사계획, 불시감사 업무개선안
		감독, 지도점검	불시 지도점검 계획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지도감독 대표자 및 관계자 주소, 전화번호
	인사	시험	다른 응시자의 석차, 성적, 답안지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시험공고 전 시험 실시계획
	각종 위원회 운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심사수행 전) 위원회 등의 회의 녹음 파일 비공식, 미확정 협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작성단위	소관업무	적용근거	비공개 대상 정보
경영기획부	회계	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 가격조서, 가격사양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입찰계약 관련 내용 등
	인사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 회의록, 변명서, 조사보고서, 입증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제외	
작성단위	소관업무	적용근거	비공개 대상 정보
경영기획부	인사	직원 정보	개인용 휴대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학력,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개인정보	고객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정보, 종교, 범죄사실 기록,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사 “법인 등” 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작성단위	소관업무	적용근거	비공개 대상 정보
경영기획부	계약	법인 정보 등	법인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등,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 예산서,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등
		위탁업체 등	용역 참여 기술자 경력, 도급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하도급 대비표 등
		경영상 비밀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계약 등을 위해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업무	적용근거	비공개 대상 정보
—	—	건설, 도시개발, 지역개발계획 등	해당 사업 운영 안함